##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-237호

#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(공시송달)

보험업법 제86조,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(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)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8일 금융위원회

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
이윤재	681214-*****	서울시 구로구 새말로

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

## 3. 서류의 내용 :

(1)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.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법규	처분 내용
	㈜리치앤코(Rich&Co.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윤재는 2014.8.6. LIG손해보험㈜(現 ㈜KB손해보험) '(무)LIG New희망플러스자녀보험'등 총 4건(초회보험료 0.2백만원)의 손해보험계약모집과관련하여 보험계약자 〈〉〉〉에게 총 0.2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8조, 제86조	업무정지 30일 (손해보험 모집업무 限) ('19.7.15 ~'19.8.13)

- (2)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4.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